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관련 최종덤핑
률을 산정내용 및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계획 통보

1.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07호, 2024.4.26.) 관련입니다.
2.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제6.9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잠정)최종덤핑률 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공개본, 비공개본)으로 '25.2.12.(수) 12시까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요청인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석여부(대리인 등 참석자명, 연락처 포함)와 발언요지(공개본, 비공개본)를 '25.2.12.(수) 12시까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최목적 : 덤핑률 산정 관련 의견 진술 및 방어권 보장

나. 일시 및 장소 : '25.2.12.(월) 16:00~, 온라인 회의(접속방법 별도 안내)

붙임: (잠정)최종덤핑률 산정내용 자료 각 1부(별도송부). 끝

무역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주한 태국대사관

과학기술서기관 김학배 과장 2025. 2. 5.
김민정

협조자

시행 덤핑조사과-97 (2025.02.05)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5874 팩스번호 044-203-4813 / hbkim@motie.go.kr / 비공개(5,7)

Korea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ceiver: See receiver list

Subject: Notification of Final Dumping Rate Calculation and Plan to Hold a Meeting of Stakeholders Related to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Oriented Polypropylene Film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1. This is related to the commencement of a review on the termina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oriented polypropylene film from China, Indonesia, and Thailan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Notification No. 2024-107, 26 April 2024)
2. In accordance with Articles 6.2 and 6.9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64-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the (Provisional) final dumping rate calculation is hereby notified as attached. If you have any opinions on this, please submit them in writing (Public, Private Version) to the Dumping Investigation Divisio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by 12.00 pm. Wednesday on February 12, 2025.
3. In addition, we plan to hold a meeting of interested partie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egulations. Please submit your attendance (including the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of attendees such as agents) and summary of speech (Public, Private Version) to the Dumping Investigation Division of Korea Trade Commission by 12:00 pm. on Wednesday, February 12, 2025.

- As Follows -

- A. Purpose of Meeting: To state opinions and guarantee defense rights related to calculating dumping rates
- B. Date and Venue: 16.00 pm. Wednesday on February 12, 2025,
Online meeting (Connection methods will be announced separately)

Attachment: (Provisional) Final dumping rate calculation contents, 1 Copy

Korea Trade Commission

Receiver: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mbass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oyal Thai Embassy

Date: 5 February 2025

Officer: Kim Hakbae (Deputy Director of Science and Technology)

Division: Dumping Investigation (Letter No. 97)

Tel: 044-203-5874

Fax: 044-203-4813

E-mail: hbkim@motie.go.kr

가. 에이제이피 (AJPlast Public Co., Ltd.)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개요) 에이제이피는 태국 방콕(본사)에 소재하고 있으며, '87년 설립되어 OPP(Oriented Polypropylene)필름을 비롯한 CPP(Cast Polypropylene)필름과 OPET(Oriented Polyester)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임

- 핵심사대상기간: 회사의 총매출액은 xxx천만THB이며, 이 중 핵심사 대상품목 총매출액(비중) 및 대한민국 수출액(비중)은 각각 xxx천만THB (xxx%), xxx천만THB (xxx%)에 해당함

- (생산) 회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xxx톤이며, 핵심사대상기간 실제 생산량은 xxx톤으로 가동률은 xxx%임

○ (판매절차)

2) 조사 경과

- '24. 4. 29. : 핵심사 질의서 송부 (기한 : '24.6.10.)
- '24. 6. 5. : 피요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기한 : '24.6.26.)
- '24. 6. 24. : 핵심사 답변서 접수
- '24. 8. 30. : 보충질의서 송부 (기한 : '24.9.9.)
- '24. 9. 6. : 피요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기한 : '24.9.20.)
- '24. 9. 20. : 보충 답변서 접수
- '24. 10. 25. : 온라인 질사 질의서 송부(기한 : '24.11.4.)
- '24. 11. 4. : 피요청인 요청에 따른 답변기한 연장(기한 : '24.11.7.)

- '24. 11. 7. : 온라인실사 답변서 접수

- '24. 11. 12. ~ 11. 13. : 대리인 대면 및 피요청인 온라인실사 실시

- '25. 1. 24. ~ 2. 4. : 실사 결과 통보 및 의견 접수

- '25. 2. 5. ~ 2. 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 '25. 2. 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3) 답변서 검토 및 실사 시 검증사항 등

-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제출한 내수 및 대한민국 수출판매자료, 원가자료, 경영통계, 조정요소, 내역별 증빙 등을 검토함

-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제출한 원답변서, 보충답변서, 실사답변서를 토대로 대리인 및 피요청인 온라인 실사를 실시함

- 피요청인은 실사 전 수정사항으로 보충답변서에서 제출한 CCN 수정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며 검토결과 물품의 특성과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CCN에 회사의 원가계산 3가지 분류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사항을 수용함

- 다만, 피요청인이 실사 준비 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요청한 해상보험료 계산오류에 대해서는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수용하지 않음
- 판매비와 관련하여 핵심사대상품목의 생산 및 판매와 관계없는 영업 외수익 등은 제외하였음

4)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요청인이 제출한 원답변서, 실사답변서 및 실사 시 수집한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정상가격, 덤핑가격, 파세가격 모두 피요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덤핑률을 산정함

1) 회사의 원가계산 3가지 분류 : 1. Plain Film, 2. Co-extruder Film, 3. Special Film

5) 물품 구분 기준

- 조사실은 제삼사대상물품의 ①등급(1=Prime, 2=Non-prime), ②두께(10마이크로미터(μm) 이상), ③금속처리 여부(1 = Metallized, 2 = Non-Metallized), ④코팅처리 여부(1 = Coated, 2 = Non-Coated), ⑤형태(1 = sheet, 2 = roll), ⑥용도·기능(1=Food/Textile Packing, 2=Cigarette Packing, 3=Album/Book Packing, 4=Adhesive Tape, 5=Paper Lamination, 6=Synthetic Paper, 7=Anti-fog, 8=Pearled, 9=Heatsealable, 0=Other)을 CCN(control code number) 분류 기준으로 제시함

- CCN은 제삼사대상물품을 구분하는 물리적 특성들로 구성된 코드로서 조사질의서를 통해 피요청인들에게 제공됨

- 피요청인은 제삼사 질의서와 함께 제공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개별 거래건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이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피요청인은 CCN 구성방법에 대하여 보증답변서 제출시 CCN이 조사대상물품의 특성과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회사의 원가계산 3가지 분류(1. Plain Film, 2. Co-extruder Film, 3. Special Film)를 CCN에 추가하였음, 이에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제삼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 CCN 예시 : Prime등급의 12μm인 금속·코팅처리 되지 않은 롤형태로 출시되는 음식을 포장용으로서 Special Film의 경우, CCN은 11222213

6)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i'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 또는 특수관계자를 통해 판매된 거래 건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불요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가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 kg)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2)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판매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나) 내수판매물량의 증분성 검증)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증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총 내수판매량(XXX톤)은 대한민국 수출량(XXX톤)의 5%를 초과한 XXX%로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증분한 물량이므로,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증분함
- 다만, CCN별 검증결과 내수판매물량이 없거나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 미만인 XXX개 모델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단위:kg)

구분	물량의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100)

3) 내수판매물량의 증분성 검증이란 수출가격과 비교되는 내수판매가격이 비교가능한 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법 내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는 동종물품의 판매물량이 증분한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원가비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을 통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증분성 검증 진행함.

구분	통상의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100)

다) 구성가격의 산정

- 내수판매물량이 증분하지 않거나, 특수판매자와의 거래 또는 원가미만 판매로 통상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 구성가격은 대한민국 수출모델의 제조원가에 공급국 내수판매 시 발생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함

(단위 : RMB/kg)

구분	제조원가 (A)	판매관리비 (B)	생산원가 (C=A+B)	작정이윤 (D)	순구성가격 (E=C+D)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조사는실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록운임, 신용비용, 포장비를 정상가격 조정 요소로 인정하여 조정함
- (내록운임) 월별 내록운임 총액을 해당 월 내수판매물량으로 배부한 단위당 내록운임을 토대로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포장타입별 발생총액을 전체 생산물량으로 나누어 포장단가를 산출한 후 건별 물량에 곱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THB/kg)

구분	정상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록운임	보험료	신용비용	포장비	

구분	정당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당가격 (C=A-B)
		내륙운임	보험료	신용비용	

7)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요청인은 대한민국 수출 시 직접 한국 내 비관계 수입상에 판매하였으므로 실제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조사실은 내륙·해상운임, 물품취급비⁴⁾, 해상보험료,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판세환급, 포장비 등을 덤핑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조정함
- (내륙·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거래건별 실제 발생금액을 추적하여 보고

4)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은행수수료) 대금회수 증빙에 기재된 은행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신용비용) 실제 대금회수일을 추적하여 신용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단기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금액을 조정함

- (포장비) 포장타입별 발생총액을 전체 생산물량으로 나누어 포장단가를 산출한 후 건별 물량에 곱하여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THB/kg)

구분	덤핑 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임	해상 운임·보험	신용 비용	판세 환급	

8) 과세가격

- 피요청인은 대한민국 수출 시 CIF 조건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를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9) 최종 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5)에 따라 산정된 피요청인의 최종 덤핑률은 3.49%임

(단위 : kg, THB/kg)

구분	대한국 수출물량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최종 덤핑률 (E=C/D×100)	가중평균 덤핑률(F)

가중평균 덤핑률						
						3.49%

5)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할 수출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text{과세가격}} \times 100$$

나. 타이펠름(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1) 답변서 제출 현황

- 조사실은 피요청인에 대하여 제심사 질의서를 발송하고 40일 이상의 충분한 회신기간⁹⁾을 부여하였으나, 피요청인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2) 조사 경과

- '24. 4. 29. : 제심사 질의서 송부 (기한 : '24.6.10.)
- '24. 6. 10. : 피요청인 답변서 미제출
- '25. 2. 5. ~ 2. 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통보 및 의견수렴
- '25. 2. 12. : (잠정)최종 덤핑률 산정내역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3) 자료의 사용

- 피요청인은 답변기한 내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협정 부속서 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4) 덤핑률

- 조사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요청인의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원심 조사당시 산정된 타이펠름의 덤핑률 10.55%를 답변서 미제출 공급자에게 적용함
- 조사실은 원심 조사시, 타이펠름에 대해 10.55%의 덤핑률을 산정한 바 있음

6)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공급자에게 질의서 발송 시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제삼사 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최종 관정을 내릴 수 있는바, 피요청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 가능함

○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1조에 따라 조사실은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4.4.29.~’24.6.10.)을 경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관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관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비교검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원심 조사에서 타이펄름에게 산정한 덤핑률은 공급자가 직접 제출한 답변서에 기초해 산출된 점, 공급국 현지실사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친 점 등에서 WTO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해당함

○ 특히,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요청인의 덤핑률은 원심 조사결과 산정된 타이펄름의 덤핑률인 10.55%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다. 그 밖의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II,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요청인에 대하여 원심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10.55%의 덤핑률을 적용함